

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

(불법행위등 신고포상제도 운영 지침 제4조제2항관련)

포상금 지급대상	지급금액	비고
① (무허가 충전)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및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- 벌크로리에서 벌크로리 또는 용기로 충전, 용기에서 용기 충전 등 - 관련규정 : 액법 제5조제1항 및 고법 제4조제1항 ◆ (증빙자료) 충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, 동영상, 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관련자료	100만원	
② (무허가 판매)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판매사업 및 LPG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- LPG판매 허가만 받고 고압가스도 판매하는 행위 포함, 허가받은 가스 종류 외의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포함 - 관련규정 : 고법 제4조제5항, 액법 제5조제2항 ◆ (증빙자료) 무허가 판매사업자의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, 동영상 등 무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	50만원	
③ (불법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충전) 불법 고압가스용기(이하 “고압용기”라 한다), 불법 LPG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등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- 폐기대상 또는 재검사 기간 경과 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등 충전 - 관련규정 : 고법 제13조제2항, 액법 제24조 또는 제32조제2항 ◆ (증빙자료) 사진(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등 제조 연월, 충전기한이 표시된 것), 동영상 등	50만원	
④ (불법용기 판매) 불법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판매하는 행위 - 폐기대상 용기 또는 재검사기간 경과한 충전된 용기 판매 - 관련규정 : 고법 제13조제4항, 액법 제24조 ◆ (증빙자료) 사진(용기제조 연월, 충전기한이 표시된 것), 거래영수증 등 ※ 홈페이지(불법행위 신고포상제) 참고사항 ②에 있는 “불법용기 증빙자료(사진) 작성방법” 참고	50만원	
⑤ (용기 불법 보관)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(사업소내 제외)에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보관하는 행위 - 관련규정 : 고법 제4조제6항, 액법 제32조제1항 ◆ (증빙자료) 주변 환경과 고압용기 및 LPG용기가 보관된 상태가 같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, 위치 등	50만원	
⑥ (불법 차량) 허가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고압가스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(사업소 대표자 명의가 아닌 LPG용기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포함) - 관련규정 : 고법 제5조의4제1항 및 2항, 액법 제32조제1항 ◆ (증빙자료) 증빙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, 차량사진 등	10만원	
⑦ (불법 사무실)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위(고압용기 및 LPG용기 판매사업) - 관련규정 : 고법 제4조제6항, 액법 제32조제1항 ◆ (증빙자료) 무허가 장소의 간판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, 위치 및 영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	10만원	
⑧ (공급시설 소비자 부담)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공급설비인 LPG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판매사업자(제외대상 : 난방기용 용기, 공업용, 선박용,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 등) - 관련규정 : 액법 제24조 ◆ (증빙자료) 가스판매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(가스 값 외에 용기 값을 받은 것이 표시된 것에 한함)	5만원	
⑨ (미검사 가스용품 판매 행위)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제조·수입·판매하는 행위 - 관련규정 : 액법 제39제1항, 제3항 ◆ (증빙자료) 가스용품 판매자의 주소(카페 주소 및 인터넷 사이트 등), 구매용품, 구매영수증 등	5만원	
⑩ (액화석유가스 설치와 검사 등)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설치공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공자나 가스를 공급한 공급자의 불법행위 - 관련규정 : 액법 제44조제2항, 제8항 ◆ (증빙자료) 미검업소의 사진, 업소명 및 업소 주소 등	5만원	
⑪ (불법 주차)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 또는 벌크로리를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에 아간 불법 주차하는 행위 - 관련규정 : 고법 제13조제1항, 액법 제24조 또는 제32조제1항 ◆ (증빙자료) 충전사업소 또는 판매사업소로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용기를 적재한 채 주차한 차량 또는 벌크로리, 위탁운송사업자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된 벌크로리를 동일 장소에서 1~2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3매 이상(사진촬영 방법 : 이동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위 현장 지형물이 동시에 나오도록 동일 구도와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촬영하고, 사진 3매가 모두 22시부터 익일 06시 내의 시간에 촬영해야 함) ※ 홈페이지(불법행위 신고포상제) 참고사항 ③에 있는 “불법주차 증빙자료(사진) 작성방법” 참고	3만원	
⑫ (검사기관의 검사 기준 미준수 등) 검사기관(전문·공인)의 검사 기준 미준수 및 불법행위 - 관련규정 : 고법 제35조의2제1항 ·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부적정(미실시, 시험압력 미유지) ----- 50만원 · 검사기록 부적정 및 미보존 ----- 30만원 · 용기외관검사 등 부적정 ----- 10만원 ◆ (증빙자료) 검사 기준 미 준수 및 불법행위 관련 사진, 동영상, 업소명 및 업소 주소 등 ※ 위법행위에 따른 차등 지급	최고50만원 ~ 최저10만원	
⑬ (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미확인)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굴착정보지원센터에 확인요청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시행하는행위(굴착공사 지점에서 반경 2m 이하 위치에 고압가스 배관 또는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) - 관련규정 : 도법 제30조의3 제1항 ◆ (증빙자료) 굴착공사현황 및 관련사진(일시, 장소, 내용, 공사시행자명 및 연락처 등)	10만원	
⑭ (미 허가·신고) 고압가스 제조·충전·저장·사용 등 고압가스 허가·신고대상인면서 허가·신고 없이 사용하는 행위 - 관련규정 : 고법 제4조제1항, 제2항 및 제5항, 제20조제1항 · 고압가스 제조·충전·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-----10만원 · 고압가스 제조·충전·사용시설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-----5만원 ◆ (증빙자료)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사진, 업소명 및 업소 주소 등	최고10만원 ~ 최저 5만원	
⑮ (온라인을 통한 불법판매) 검사받지 않은 용기 또는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(내용적 10L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 함) - 관련규정 : 고법 제4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 ◆ (증빙자료) 고압가스(용기) 구매영수증, 고압가스용기 관련사진(용기 전·후단사진, 상부사진, 전체사진 각1부)	5만원	